전주대학교지부 운영규정

1998년 11월 6일 제정
2003년 08월 08일 개정
2006년 06월 22일 개정
2014년 08월 11일 개정
2015년 10월 14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제정근거) 본 규정은 전국대학노동조합(이하'조합') 규약에 의거 지부운영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명칭) 전국대학노동조합 전주대학교지부(이하'지부')라 칭한다.

제3조(사무소) 지부의 주된 사무소는 전주대학교 내에 둔다.

제4조(목적) 이 규정은 조합 및 지역본부의 합리적 운영과 조직 강화를 도모하며, 조합의 제반 문제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지부의 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활동) 지부는 조합의 기본단위로 다음과 같이 활동한다.

① 대학 노동자의 통일·단결을 도모하며, 조합의 사업 및 목적 실현을 위한 활동을 수행한다.

② 지부는 조합원의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조합의 결정에 의한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2. 지부 문제에 해당되는 긴급한 단체협약 및 보충협약에 관한 사항.
3. 지부 현장문제와 관련된 노사협의
4. 지부 조합원의 생활권과 노동권의 확립
5. 지부 조합원의 고충처리 및 복지 후생사업
6. 근로조건의 유지 및 개선
7. 대학운영의 민주화와 제도의 합리적 개선
8. 기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제정 및 개정) 본 규정의 개정은 지부 총회(대의원회)에서 재적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중앙위원회의 승인으로 확정한다.

제2장 조직

제7조(구성) 지부는 해당 사업장 단위, 지역지부인 경우에는 지역단위에 속해있는 대학노동자로서 조합에 가입한 자로 구성한다.

제8조(가입 및 탈퇴) ①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은 당연히 지부에 소속되며, 조합 탈퇴와 동시에 지부에서도 탈퇴된다.

② 가입의 절차는 가입신청서를 지부에 제출하고 지부의 심의에 의해 조합원이 되며, 탈퇴도 가입의 절차에 준한다.

제9조(탈퇴자의 재가입) 탈퇴자가 조합에 재가입 할 경우에는 대의원회에서 재적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권리와 의무

제10조(권리) 조합원은 조합 규약에서 정한 권리를 지부에서도 평등하게 행사할 수 있으며 규약 및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권리를 제한받지 않는다.

1. 각종회의 참가권, 발언권, 규약 및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 의결권
2. 선거권 및 피선거권
3. 조합 활동에 균등하게 참여할 권리
4. 조합시설의 이용과 사업에 참여할 권리
5. 각종회의 결정사항 및 업무에 대해 공개, 열람, 설명을 요구할 권리
6.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청구의 권리

제11조(의무) 조합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다.

1. 조합의 강령, 규약, 규정을 준수할 의무
2. 각종회의 및 활동에 참여할 의무
3. 조합의 제반사업 및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4. 각종 법령과 노사간 협약 등에 의한 권익을 수호할 의무
5. 규약에 의한 조합비, 규약이 정한 절차에 의해 결의된 부과금을 납부할 의무
6. 조합의 명예를 유지할 의무

제4장 기구 및 회의

제12조(기구) 지부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총회
2. 대의원회

3. 자문위원회의
4. 집행부회의
5. 회계감사회의
6. 선거관리위원회
7. 특별위원회

제1절 총회

제13조(구성 및 운영) 총회는 지부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제14조(소집) 총회의 소집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정기총회는 연 1회 6,7월중 지부장이 소집하며, 대의원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부장이 소집한다.

1.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집행부의 의결이 있는 경우
3. 대의원 또는 조합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소집 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4. 위원장이 중앙집행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소집할 수 있다. 단, 이때의 회의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

③ 전 2호 및 3호의 경우 지부장은 10일 이내에 총회가 개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지부장이 전항의 기한 내에 조합원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본부장을 경유하여 위원장이 대표 소집 요청 자를 소집권자로 지명하여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 총회의 소집은 회의 일로부터 7일전에 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기하여 지부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15조(기능)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지부 임원의 선출 및 해임, 불신임에 관한 사항
2. 조합 대의원 선출에 및 해임, 불신임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5. 지부 분활 및 합병 건의에 관한 사항
6. 특별 부과금 결정에 관한 사항
7. 기금 및 자산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8. 조합에서 위임한 단체협약 체결 및 개정, 보충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9. 지부 쟁의행위 결의에 관한 사항.
10. 조합 의결기관에 상정할 의안 채택에 관한 사항.
11. 조합 및 지역본부 의결기관에서 위임한 사항.
12. 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13. 희생자 구제에 관한 사항

14. 기타 중요한 사항

② 다음의 사항은 반드시 총회에서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결의하여야 한다.

1. 지부장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지부 쟁의행위 결의에 관한 사항

제2절 대의원회

제16조(구성) ① 대의원회는 지부장, 부지부장 및 사무국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② 제16조 1항에 의거하여 일반직, 기능직, 여성별로 직접, 비밀, 무기명으로 선출한다.

제17조(선출 및 임기) 대의원회의 선출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① 대의원은 직종 및 성별을 고려하여 13명 이내로 선출한다.

② 대의원은 정기 총회 일까지 선출하여야 한다.

③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회의 소집)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부장이 지체 없이 대의원회를 소집한다.

1.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② 대의원회의 의장은 지부장이 된다. 단, 조합에서 대의원회를 소집한 경우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의장이 된다.

제19조(기능) 대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조합·지역본부에서 위임한 사항
2. 총회 수임사항의 처리
3.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 및 추경예산안 승인
4. 선거관리위원의 인준
5. 사무국장 및 부장의 인준
6. 조합원의 징계
7. 각종 규정의 제정 및 개정
8. 단체협약안 및 체결내용 승인
9. 기타 필요한 사항

제3절 자문위원회의

제20조(구성) 전직 지부장(위원장)과 지부장이 추천 임명한 조합원의 원로로 구성한다.

제21조(소집)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자문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22조(기능) 지부 사업 자문 역할을 한다.

제4절 집행부회의

제23조(구성) 집행부회의는 지부장, 부지부장, 사무국장, 각부(차)장, 특별위원장으로 구성한다.

제24조(소집) 집행부회의 소집은 월 2회 이상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집행부 3분의 1이상이 소집을 요청한때 지부장이 소집한다.

제25조(기능) 집행부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지부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2. 총회 또는 대의원회 수임 사항
3. 조합, 지역본부에서 위임한 사항
4. 지부 총회, 대의원회 안건 심의에 관한 사항
5. 지부 특별위원회 위원장 임명 동의에 관한 사항
6. 지부 조정신청에 관한 사항
7. 지부 단체교섭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8. 지부 회계감사 요청 및 예비비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
9. 지부 쟁의대책위원회 등 각종 대책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10. 기타 중요 의결사항.

제5절 회계감사회의

제26조(구성 및 소집) 회계감사회의 구성 및 소집은 다음과 같다.

1. 총회에서 직접, 비밀, 무기명으로 선출한 2인의 회계감사로 구성하며 ,회계감사회의 결의로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2. 회계감사회의는 6개월에 1회 이상 소집하여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지부장 또는 조합원,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감사요청이 있을 때 지체없이 소집하며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7조(기능) 회계감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조합, 지역본부의 대의원회 또는 중앙위원회 수임사항 감사.
2. 지부 총회, 대의원회 수임사항 감사.
3. 재정 및 예산집행 사항 감사.
4. 회계감사 후 그 결과를 지부대의원회 및 총회에 보고하고 시정 또는 징계를 요청할 수 있으며 조합에는15일 이내에 보고한다.
5. 대의원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6절 선거관리위원회

제28조(구성) 지부장이 추천하여 대의원회의 승인을 얻은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1년

으로 한다. 단, 연임할 수 있다.

제29조(위원장)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0조(기능)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부장, 부지부장, 회계감사 및 대의원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며, 당선자를 확인, 공고한다.

제7절 회의

제31조(성립과 의결) 지부의 각종 회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 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 한 바에 따른다.

제32조(특별 의결) 지부의 결의사항 중 다음의 사항은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지부규정 및 각종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임원의 징계 및 해임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3. 긴급동의 성립에 관한 사항

제5장 임원

제33조(임원) 지부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지부장 1명
2. 부지부장 2명
3. 사무(국)장 1명
4. 회계감사 2명 이상

제1절 지부장 및 부지부장

제34조(임기) 지부장 및 부지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연임할 수 있다.

제35조(선출) 지부장의 선출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행한다.

1. 지부장은 총회에서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2. 재적조합원 과반수참가와 참가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지부장 당선자로 한다.
3. 제2호의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상위 득표자 2인이 결선 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4.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에 의한다.

제36조(지부장의 임무) 지부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지부를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2. 지부운영규정 및 제 규정을 해석한다.
3. 공문서 및 제 증명서 서명인이 된다.
4. 각종회의를 소집하여 의장이 된다.
5. 부(차)장을 임명한다.
6. 조합에서 위임한 단체교섭 및 협약 체결권 그리고 쟁의 제 기권을 갖는다.
7. 조직질서 유지와 조합원의 권익수호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8. 선거관리위원을 추천한다.
9. 자문기구로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37조(부지부장 선출 및 임무) 부지부장의 선출 및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부지부장은 2인을 총회에서 직접·비밀·무기명으로 선출한다.
2. 지부장을 보좌하며 지부장 유고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제2절 사무국장

제38조(임기 및 선출) 사무국장의 임기 및 선출은 다음과 같다.
1. 사무국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연임할 수 있다.
2. 지부장의 추천으로 대의원회의 인준을 얻어 선출한다.

제39조(사무국장의 임무) 사무국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지부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를 관장한다.
2. 지부장의 결재에 의하여 예산을 집행하며 의무 금을 수납한다.
3. 현금 또는 재산을 관리한다.
4. 사무 및 회계감사에 응한다.

제3절 부서 및 결원처리

제40조(부서와 임무) 조합은 업무집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둘 수 있으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정책기획부 : 정책수립 및 기획, 투쟁 그리고 주요성명서 작성 활동에 관한 사항
2. 교육부 : 조합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그리고 규정개정, 통계, 대내외 정보조사 등에 관한 사항
3. 미디어선전부 : 홍보전략 수립 및 시행, 대내외 미디어 매체 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복지문화부 : 후생복지 및 사회봉사, 각종 문화 활동에 관한 사항
5. 여성부 : 여성 정책수립 및 대책마련

제41조(부장 및 차장) ① 각 부에는 부장 1인을 두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연임할 수 있다.
② 각 부장은 대의원회의 인준을 얻어 지부장이 임명한다.
③ 각 부에는 차장을 둘 수 있으며, 지부장이 임명한다.

제42조(결원처리) ① 지부장 이외의 임원이 임기만료 전에 사표를 제출하였을 경우 사표가 접수되어 수리된 때로부터 자격을 상실한다.
② 부지부장, 사무국장이 사표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지부장이 대의원회의 동의를 얻어 대리를 임명할 수 있다.

제43조(보선) 지부장, 회계감사의 유고 시 신속하게 보선한다. 단, 유고 된 지부장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보선하지 않고 수석부지부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유고 된 회계감사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대의원회에서 그 대리를 선임한다.

제44조(탄핵) 지부 임원의 탄핵은 다음과 같다.
① 임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 조합의 강령, 규약, 지역본부, 지부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총회(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탄핵할 수 있다.
② 탄핵소추는 대의원 및 조합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할 수 있다.
③ 탄핵소추 받은 자는 그 의결이 있을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되며 의결되면 즉시 그 직에서 해임된다.
④ 지부는 탄핵소추 또는 탄핵의결 즉시 지역본부, 조합에 보고하여 중앙 위원회(대의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45조(탄핵재심청구) 전 조의 규정에 의하여 탄핵처분을 받은 임원은 15일 이내에 지부장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은 집행위원회에서 구성한 탄핵재심위원회에서 진행하며, 재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진행하여야 한다. 단, 지부장이 탄핵될 경우 그 재심청구에 관한 사항은 조합규약에 따른다.

제6장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

제46조(단체교섭) 조합이 위임할 경우 지부장이 교섭을 진행한다.

제47조(체결) 조합으로부터 지부가 체결권을 수임 받아 단체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지부총회(대의원회)의 인준을 받아 조합의 승인으로 체결하며, 교섭위원들은 연명으로 서명한다.

제48조(단체교섭안) 단체교섭안은 조합원의 민주적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총회(대의원회)에서 확정한다.

제49조(단체교섭단 구성) 지부 단체교섭단 구성은 지부장을 포함하여 집행부회의 추천에 의해 구성하고 지부장의 승인으로 확정한다.

제50조(노사협의위원) ① 노사협의위원은 지부장, 부지부장과 지부장이 추천하여 대의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② 지부장은 노사협의회의 노조 측 대표위원이 된다.

제7장 쟁의

제51조(조정신청) 지부의 조정신청은 지역본부 집행위원회의와 조합에 보고한 후 지부 집행부회의 또는 대의원회의 결의로써 한다.

제52조(쟁의행위) 지부의 쟁의행위는 지역본부 운영위원회에서 결의 사유와 내용을 보고하고 동의를 얻은 후 조합의 승인을 거쳐 지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해 재적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53조(쟁의대책위원회) 쟁의대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운영은 조합 규약을 준용한다.

제8장 재정 및 회계

제54조(재정) 지부의 재정은 조합의 교부 지원금과 기부금 결의에 의한 특별 부과금, 기타 사업의 수입 및 잡수입 등으로 한다.

제55조(회계) ① 조합의 재정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 관리한다.
② 일반회계는 조합비와 기부금등으로 구성하며 특별회계는 기금과 특별 부과금으로 한다.

제56조(의무금) 조합원은 매월 급여의 1%를 의무금으로 납부한다.

제57조(회계년도) 지부의 회계년도는 매년 9월 1일부터 익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8조(회계규정) 조합의 회계에 관한 사항은 조합의 회계를 준용한다.

제9장 상벌 및 희생자 구제

제59조(포상) 지부 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사람은 집행부회의의 의결을 거쳐 지부장이 포상할 수 있으며, 타 기관에 추천할 수 있다.

제60조(징계 및 재심) 조합의 규약이나 지부의 운영규정을 위반하거나 조직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징계할 수 있으며, 조합규약에 의거 처리한다.

제61조(규정) 상벌에 관한 기타사항은 별도규정에 의한다.

제62조(희생자 구제) 지부 조합원이 노동자의 권익수호를 위한 활동이나 조합 활동으로 인하

여 신분적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했을 경우, 지부는 불이익에 대한 원상회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조합 규약 및 규정 지역본부 운영규정을 준용하거나 통상관례 및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3조(경과조치) 본 규정 제31조에도 불구하고 창립(결의)당시 단위노조 위원장 등은 지부장 등으로 승계 되어 잔여임기가 보장된다.